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입국금지 대상을 정신장애인에서
체류활동 보조인이 없는 사람으로 변경〉

■ 최보운의원 · 서미화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258호)

2025.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최보윤의원 · 서미화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4. 12. 5.
3. 회 부 일: 2024. 12.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을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에서 밝힌 협약 제18조(이주및국적의자유)와 관련하여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현행법 제11조를 폐지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에 우려를 표함. 또한,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고 당사국이 차별적인 조항을 폐지하는 긴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장애를 이유로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을 질병으로 보조가 필요함에도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려는 취지임(안 제11조제1항제5호 개정).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입국금지 대상 외국인을 현행법상 규정된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고 사리 분별력이 없는 정신장애인”에서 “질병으로 보조가 필요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5호 개정).

현행	개정안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 4. (생략) 5. <u>사리 분별력이 없고</u>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u>정신장애인</u> ,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 8. (생략) ② (생략)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질병으로 보조가 필요함에도</u> ----- --- <u>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u> ----- ----- ----- 6.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는 2006년 12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서, 협약 당사국 보고서 심사, 당사국에 대

한 제안 및 권고,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발생 시 관련 사항 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개요 】

1. 설립 배경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2006.12월 채택되고, 2008.5월 발효됨에 따라 동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인 장애인권리위원회 설립 ※ 우리나라는 2008.12월 동 협약에 가입
2. 주요 기능 • 장애인권리협약 협약 당사국 보고서 심사 • 당사국에 대한 제안 및 권고 • 개인 및 단체 진정 접수 및 심사(동 협약 선택의정서 당사국 해당) • 동 협약을 위반한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일어날 경우, 관련 사항 조사(동 협약 선택의정서 당사국 해당)
3. 구 성 • 개인 자격의 장애인 권리 전문가 18명으로 구성 • 우리나라 김미연 장애인권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023-26년 임기(4년) 장애인권리 위원으로 재선되어 활동중 ★ 김형식 교수 2011-14년에 이어 2015-18년 임기 수행, 김미연 장애여성문화공동체 대표 2019-22년 임기 수행

※ 자료 : 외교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인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2008년 6월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2008년 12월에 가결된 후 동 협약에 가입을 완료한 바 있음.¹⁾

1) 당시 우리나라는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와 충돌할 소지가 있는 협약 제25조(e)호의 생명보험 관련 규정은 유보한 채 나머지 조항을 모두 수용하였음.

【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주요내용(전문, 본문 50개조로 구성)】

- 가.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의무를 부담함(안 제4조제1항).
- 나.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이유에 근거한 차별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평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함(안 제5조제2항).
- 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 능력을 향유함을 인정함(안 제12조제2항).
- 라. 당사국은 가정 내외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유형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16조제1항).
- 마.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진전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35조제1항).
- 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와 정보에 대한 심사를 기초로 제안 및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음(안 제39조).

※ 자료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일부(의안번호 1800049)

또한, 동 협약 제35조와 제36조는 각 당사국으로 하여금 이 협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2년 안에 조치 및 진전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보고서와 4년마다 후속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적절·권고 등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5조 당사국 보고서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진전사항에 관하여 이 협약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2년 안에 종합적인 보고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2. 그 이후 당사국은 최소한 4년마다 후속 보고서를 제출하며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출한다.
3. ~ 5. (생략)

제36조 보고서의 검토

1. 위원회는 각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고서에 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제안과 일반적인 권고를 하며, 이를 관련 당사국에 송부한다. 당사국은 이에 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2. ~ 5. (생략)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8년에 협약을 가입하고 2011년에 제1차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지속적으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현재까지 제2·3차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이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2022년에 최종견해를 밝힌 바 있음.

【 우리나라 국가보고서 작성·심의 경과 】

- 우리나라는 '08. 12. 가입('09. 1.발효), '11년 제1차 보고서 제출 이후 4년 마다 국가보고서 제출 ('14년·'22년, 총 2회 제출 및 심의)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쟁점목록* 전달	2014. 4.	2018. 2.			-	
제출	2011. 6.	2019. 3.		2031. 1. 예정		
심의	2014. 9.	2022. 8.(통합심의)**		2032.(통합심의 예정)		

* 쟁점목록(List of issue): ①특정 이슈에 대한 질문, ②새로운 법률·기관·정책·인권조약 비준에 대한 업데이트, ③세분화 된 데이터와 통계 등 추가의 설명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국가보고서 제출 최소 1년 전에 당사국에 전달되며, 국가보고서 일부로 인정

** '19년 1월 국가보고서 제출 후 '20년 심의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심의 지연

- 제2·3차 보고서 주요 내용

-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실적

- ※ 2019년 기존 의료적 모델 중심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사회적 모델인 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도입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 등

-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성년후견제도 도입(2013년)

- 한국수화언어법 제정(2016년)

-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 차별 금지 규정에 대한 유보 철회(2021년)

- 선택의정서의 국내 비준 절차 추진(2021년)

※ 자료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권고 이행계획(안), 관계부처 합동

특히 협약 제18조(이주 및 국적의 자유)는 장애인에 대한 이주의 자유, 거주지 선택 및 국적의 자유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인정하고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결과 「출입국관리법」 제11조가 심리사회적 장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차별적 조항으로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

【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제18조 관련 2·3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

<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제18조(이주 및 국적의 자유) >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이주의 자유, 거주지 선택 및 국적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 (가) 국적을 취득 및 변경할 권리를 가지며, 임의로 또는 장애를 이유로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나) 장애를 이유로 국적 관련 서류 또는 기타 신분증명서류를 취득, 소유 및 사용하거나 또는 이주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데에 필요할 수 있는 이민절차와 같은 관련 절차를 이용할 자격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다) 모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로부터 출국할 자유가 있다.
 - (라) 임의적으로 또는 장애를 이유로 모국에 입국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장애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며, 출생 시부터 이름을 가질 권리, 국적을 취득할 권리 및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그 부모에 의하여 양육될 권리를 갖는다.

< 동 협약 제18조 관련 제2·3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 이주 및 국적의 자유(제18조)

39. 위원회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특히 심리사회적 장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와 이주 장애인의 기본적인 장애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를 폐지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40. 위원회는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고, 이주 장애인이 기본적인 장애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당사국이 차별적인 조항을 폐지하는 조치를 시급히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에 개정안은 입국 금지 대상을 질병으로 보조가 필요함에도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함.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제거함으로써 입국의 자유와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유엔 장애인권리

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통한 국제적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나, 개정안의 문언에 따를 경우 “정신장애인”의 용어가 삭제되면 오히려 신체적인 질병으로 보조가 필요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57